

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공고

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 22개 시·군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0일

경상북도지사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
- 공고기간 : 2025. 1. 20.(월) ~ 2025. 2. 14.(금) (26일간)
 - ※ 접수기간 : 2025. 2. 12.(수) ~ 2. 14.(금) (3일간)
- 사업기간 :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~ 2025. 11. 30.
 - ※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경북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시기 상반기 추진 권장
- 대상사업 :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관련 사업
- 대상지역 : 경상북도 22개 시·군
- 지원금액 : 사업자별 최대 50백만원
 - 총사업비(기금지원금+자부담) 20% 이상 자부담 필수
 - 부가가치세 환급·공제 대상자는 공급가액분만을 지급

- 신청자격 : 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자
 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
 - 관광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*
- * 정관, 회칙 등에 따라 관광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
- 중복 사업체(기관/대표자/사업장)의 경우 최대 1건 지원
- ※ 동일 사업(체)으로 사업비 중복 신청 또는 수령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

❖ 지원 제외대상

- ▶ 공공기관, 도-시군 출자출연기관 제외
- ▶ 직전 5년 이내(2020~2024년)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에 선정된 사업자
- ▶ 공고일 기준 사업등록 개시일 1년 미만 사업자
- ▶ '25년 중 동일 사업을 위해 정부·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자
- ▶ 최근 5년 이내 횡령 및 부정 지출 등 공공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자
- ▶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

2 신청 및 접수

- 신청방법 : 보조사업관리시스템*을 통한 접수
 - ※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관리시스템 : <https://gctogg.or.kr>
 - 보조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일체(PDF본)를 저장하여 접수신청 메뉴를 통한 접수
- 신청(접수)기간 : 2025. 2. 12.(수) ~ 2. 14.(금) (3일간)
 - 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, 최종 대상으로 선정 시 별도 원본 서류 접수 요청 예정

접수방법	① 보조사업관리시스템 (https://gctogg.or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접수/교부신청 → 접수신청 → 신청 메뉴 클릭 ③ 업체 정보 작성 및 신청서류(PDF본) 첨부 후 → 신청하기 최종 클릭 ④ 접수 확인 방법 : 접수/교부신청 → 접수확인 → 접수내역 확인 ※ 접수 진행단계가 '신청'일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됨
주의사항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반드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함 ※ 서식별(1호~9호) PDF본 및 취합본 업로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제출 내용(원본)과 모든 내용 동일해야 함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산편성서 작성 시, 예산편성 기준표 필히 참고하여 예산 편성 요함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025 경북 방문의 해 브랜드 슬로건 활용 계획 필수 기재

○ 제출서류

세부구분	서류명	서식(호)	분량한도	접수방법
신청 및 계획서	보조사업 신청서	1	1	보조사업 전용시스템
	단체소개 및 단체실적 증빙	2	2	
	사업개요서	3	1	
	예산편성서	4	1	
	세부사업계획서	8	10-15	
증빙 및 동의서	보조사업 유의사항 확인서	5	1	
	개인정보처리동의서	6	1	
	통합 위임장 (공동대표일 경우)	7	1	
	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	9	1	
	국세·지방세완납증명서*공고일 이후 발급		1	

○ 문의처 :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

○ 신청문의 : ☎054-740-3903 / 이메일 gctogg@gmail.com

3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

- 지원사업 : 관광 관련 홍보·교육, 콘텐츠 개발사업 등
 -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지원사업 공모

❖ 지원사업 예시

- ▶ 생활인구 유입을(청년, 외국인 등) 위한 관광 콘텐츠 발굴
- ▶ 경북 지역 관광지 연계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
- ▶ 지역 특색을 활용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
- ▶ 시·군 연계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
- ※ 지원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동일 사업(콘텐츠) 선정 제외

- 우대사항 :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2025 경북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주제로 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

- 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단위 참여사업, 육아 친화시설 활용 사업
- ② 관광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항, 철도 등 교통편과 연계한 사업

* 5개 철도 개통 포함(중부내륙선, 동해중부선, 중앙선, 대경선,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)

- 공모조건 : 사업 추진 시 2025 경북 방문의 해 브랜드 슬로건 「It's Time to Gyeongbuk」 활용 필수
 - ※ 사업계획서 내 각종 홍보물 등 슬로건 활용 계획 필수 기재
- 선정기준
 - 신청사업(자)의 기금지원 사업 취지·목적 부합성 확인
 - 사업계획의 적정성, 사업주체의 역량, 사업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
 -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(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)으로 국가,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동일 성격의 사업은 제외
- 선정시기 : 2025년 2월 중
- 선정방법 :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- 선정결과 :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
 - ※ 선정 사업자 개별 통보 병행, 단 선정업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참여 1회 제한
-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4 예산편성 가이드라인

목	세목	지출항목 (예)	유의사항
사업진행비 ※ 1개 항목당 총사업비 30% 한도	일반용역	기획사/대행사, 영상제작 등	- 사업 주요사항 단순 재교부(재위탁) 금지 - 본 보조사업 선정 (타)사업자에게 지출 불가 - 단순 사무용품 및 자산취득성 구매 불가 (PC, 제조기기 등) - 1개 업체 지출금액 총 사업비 30%한도
	홍보·마케팅	인쇄물, 온라인홍보 광고비 등	
	제작비	제작비 (기념품 샘플 제작 등)	
	임차료	사업관련 대관료(공연장, 전시장 등), 부대시설이용료, 장비·소품 대여비	
	용품구입비	행사, 이벤트 등을 위한 소모성 용품 구매, 재료비 등	
인건비 ※ 인건비 총합 총사업비 20% 한도	신규채용	사업기간 중 신규채용 인력의 급여 인건비 (신규채용인력, 출연료, 심사, 보조인력 등)	- 2025년 최저임금에 준하는 비용까지 사업비로 지원
	단순인건	사무보조, 행사보조 등	- 1인 지급금액이 12만5천원을 초과시 원천세 신고·납부 - 기존직원 지출 불가 - 월 60시간 초과금지
	전문인력	원고료, 통역료 등	- 기존직원 지출 불가
일반관리비 ※ 일반관리비 총사업비 5% 한도	사업 추진비	출장비(공무원 여비규정 준용) (대중교통비, 숙박비)	- 유류비 지출불가
	사무용품비	사업수행과 관련된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	- 300,000원 한도
기타 운영비	공공요금 및 제세	공공요금 및 제세 (사업관련 우편비용, 이체수수료 등) 회계검증수수료(필수)	- 사업비에 따른 회계 검증수수료 편성 필수
	복리 후생비	신규채용 인력관련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	

※ 세부 지침은 사업선정 후 교부신청 안내자료 참고

※ 회계검증수수료 산정표 (총사업비 기준, 최종 사업비 금액에 따라 변동 有)

사업비	~3천만원 이하	3천만원 초과 ~ 4천만원이하	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이하	5천만원 초과 ~
수수료 금액	300,000원	400,000원	500,000원	600,000원

-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 규모, 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 지급 가능
- 사업신청자는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 평가지표(정량 중심)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등록(제출)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 있음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
- 심사과정과 평가내용 등 심사자료는 비공개로 함
- 사업선정자는 사업완료 후 지정서식의 사업실적·정산보고서를 2025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- 사업완료 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, 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사업 참여를 1회 제한함
-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 및 자료는 저작권/초상권의 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, 차후에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법적 책임은 사업선정자에 있음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, 법령·조례 등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사용하는 자는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사업비 및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부과, 명단공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
- 공고내용 및 미공시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해석에 따름

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예산편성 기본지침

1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적정예산 편성

- 예산은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(실질 소요예산 수립)
-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. 즉, 예비비, 잡비, 기타운영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
 - ※ 각 사업,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

2 사업비 집행시 적격 증빙이 가능한 항목만 편성

-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지출이 가능한 항목만 편성
 - 간이계산서 등을 근거로 한 집행 시 불인정 처리
 - 인건비 지출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시 불인정
- ※ 근로계약 시 4대 보험 가입 증빙

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 편성 (선심성 예산 억제)

- 기금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성격의 경비 편성 불가
 - 시설비, 수선비, 리모델링, 시설부대비, 기자재 등 자본적 경비
 - 기존 인력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,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
-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, 강사료,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- 임차료(버스, 행사장), 식비, 체험비 등 선심성 경비 편성불가,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 처리
- 상금, 상품, 문화상품권 등 현금·현물 관련 보조금 사용 전면 금지
 - 단, 대회·축제와 같은 행사에 소요되는 상금·상품의 경우 별도의 자부담으로 지출 가능(기금 사용 불가), 과다 금액 지출 불가
 - 반드시 수령인의 서명 및 인적정보를 기재한 수령확인서를 정산시 첨부

- 인건비 편성시 가이드라인 철저 준수 (총사업비 20%내에서 편성 가능)
 - 단순 인건비 및 강사료 등의 경우 원천세 미신고시 집행 불인정
 - 근로계약(신규채용) 인건비의 경우 경상북도 주소지를 가진 인력만 채용 가능하며,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는 편성 불가
- 용역 및 위탁사업시 가이드라인 준수
 - 총사업비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한 지출처에 지출 불가
 - 전자세금계산서, 계약서, 견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 확보
 - 2025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타 사업자에게 사업비 사용 금지

④ 공통 기준경비의 예산편성단가 가이드라인 준수

- 강사료, 원고료, 여비, 단순인건비 등 공통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(추후 별도 공지)
- 기타 경비(물품, 용역 등)는 조달청 및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·공표한 가격 또는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행가격을 조사·확인한 가격으로 함
- 기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,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름

⑤ 기타 참고사항

- 자부담 예산 집행을 전제로 하여 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, 기금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자부담금 편성
- 특별한 규정 및 공사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
- 사업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
-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(예산집행계획)를 제출하여야 함(선정 후 별도 통보)

- 공공재정환수법 시행(2020.1.1.)에 따른 -

「보조사업」 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문

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(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)

- 시행일자 : 2020. 1. 1.부터 시행 ※ 2020.1.1.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
- 부정이익금(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)에 대한 의무적 환수
 - 보조사업자의 '허위청구', '과다청구', '목적외사용', '오지급'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
- 제재부가금(5배 이내) 부과 및 징수
 -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
 - 환수금 외에 '허위청구'(5배), '과다청구'(3배), '목적외사용'(2배) 부과 및 징수
-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
 -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

□ 협조사항

-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
-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
-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 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